

관 할 부 대 명(관 리 부 대 명)

수신자
(경 유)

제 목 사전상담 확인서

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전상담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

신청인 정보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사전상담 결과	대상토지(지번)	
	접수번호	사전상담 일시
	상담요청내용	
	※ 건축행위에 관한 상담인 경우, 접수받은 사전상담 요청서의 건축구분(신·증축 등), 건축개요(대지면적, 건축면적, 연면적 합계, 층수, 건축물 최고높이)를 기재하여 통지할 것 상담결과	

※ 사전상담은 유사사례에 대한 협의결과를 기초로 정식 협의 전에 결과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것으로,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정식으로 협의 요청 시 통보되는 협의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(관 할 부 대 장 직인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